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「식품위생법」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상위법의 조항을 일치시키고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해 일부 조항을 현실성 있게 개정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식품위생법의 조례 위임조항 개정(안 제1조)
-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해 분임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 지정(안 제5조)
- 기금심의위원회 시의원 추가 및 간사 조항 신설(안 제6조)
- 그 밖에 조례의 용어를 현실에 맞게 개정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식품위생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 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『구미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은
 - 「식품위생법」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상위법의 조항과, 조례의 용어를 일치시키고,
 -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해 분임기금운용관(국장)과 기금출납원(과장)을 지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 하다고 판단됨.
-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